

파주시 청년공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파주시 청년공간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7일
파 주 시 장

1. 채용내용

- 가.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: 청년공간 운영 매니저 1명
- 나. 근무일 : 주5일, 1일 8시간 근무

근무요일	근무시간	채용기간
화 ~ 금	12:00 ~ 21:00	2026. 5. 18. ~ 12. 31. / 약 7개월
토	09:00 ~ 18:00	

- 다. 직무내용 : 청년공간 운영 전반 및 특강·청년SNS 관리 등

구분	업무내용
청년공간 운영 전반	이용객 및 전화응대, 공간대관 관리 및 홍보물 디자인, 프로그램 신청자 관리 및 진행보조, 자료작성, 청년정책 안내, 청년행사 등 지원, 그밖에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프로그램 및 청년SNS 운영	특강 운영, 네이버플레이스, 인스타그램, 블로그 등 청년공간 SNS 운영 등

- 라. 근무장소 : 파주시청년공간 GP1939
(파주시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 6층)
- 마. 보수 : 월급여 2,522,630원/ 기타수당 별도 지급
* 개인별 통장입금 원칙, 4대 보험 가입 득
- 바. **주중 야간 및 토요일 근무사항 반드시 숙지 후 지원**

2. 응시자격(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)

- 가. 응시연령 :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
- 나. 거주지제한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자
- 다. 성별·학력 : 제한없음 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)
- 라. 필수요건 및 우대사항

< 필수요건 >

-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근무 가능자
 -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자(엑셀, 한글 사용이 능숙한 자)
 - 청년공간 운영에 관심과 책임감이 있는 자
 - SNS 활용 가능자 (인스타그램, 카카오톡, 블로그 등 활용 가능)

< 우대사항 >

- 공고일 현재 청년인 자(19 ~ 39세)
- 공고일 현재 청년센터 또는 관련 업무 근무경력자
-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(워드프로세스, 컴퓨터활용능력 등)
- 홍보 및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(포토샵 등)
-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 본인 또는 그 자녀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* 중 취업지원 대상자 본인 및 가족
[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]

마. 결격사유

- 「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」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고교 및 대학(원)에 재학 중인 경우, 단 **휴학자 및 졸업예정자(유예자) 가능**
- 채용기간 내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 예정인 자 (중복참여 불가)

3. 선발방법

가. 1차 심사(서류전형) :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

-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격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심사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
 - ※ 단, 서류전형 접수 동점자 발생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 모두 면접시험 응시 통보

나. 2차 심사(면접전형)

- 1차 심사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, 지원동기,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 종합평가

다. 예비합격자 운영 등

- 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발생,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대체 채용

4. 채용일정

가. 채용공고 : 2025. 4. 27.(월) ~ 5. 8.(금)

나. 서류접수 : 2025. 5. 4.(월) ~ 5. 8.(금) 18:00까지 접수 인정

- 접수처 :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(파주시청년공간 GP1939)
 - ※ 파주시 금릉역로 84, 청원센터럴타워 6층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공휴일 제외) 또는 이메일(sweetsook@korea.kr) 접수
 - ※ 단, 방문접수자도 이메일로 서류 전송 **必**, 방문접수 시 접수가능시간 : 9:30 ~ 18:00(휴일제외)

다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6. 5. 12.(화) 14시 이후

***파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및 개별통보, 미 선발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.**

라. 면접심사일 : 2026. 5. 13.(수)^{개별통보예정, 변동가능}

마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 5. 15.(금)^{예정}, ***파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및 개별통보, 미 선발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.**

***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.**

5. 응시자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
나.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다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
라. 주민등록초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본 남성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
마.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명서류(해당자)

※ 필요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, 응시자에게 경력사실 확인서 등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바.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서류 1부.(해당자)

6. 유의사항

- 가. 근무는 주 5일이고, 근무 시간은 화~금요일 12시부터 21시까지,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채용분야 및 근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- 나.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(응시서류반환청구서 작성)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, {최종 채용 합격자,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및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},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함.
- 다. 채용과정 중 인사청탁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채용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.
- 라.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.
- 마.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- 바. 면접접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기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사.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, 근무 포기 또는 자진 퇴직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예비 합격자로 채용하며, 최종합격 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 및 합격 결정 채용에 관련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.
- 아.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
-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
 - 예산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피할 때
 -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 - 무단결근·지각·조퇴를 비롯, 근무시간 미준수, 근무지 이탈, 기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음주, 연락두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
-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(☎031-940-5102)

<서식1>

용 시 원 서

인 적 사 항	성 명		생년월일	
	현 주 소	(우:)		
	e-Mail		병역사항	필, 면제, 미필 기간: -
	컴퓨터활용능력 (엑셀, 한글)	상 (), 중(), 하()	휴 대 폰	
학 력 사 항	학 교 명	재 학 기 간	전 공	수학구분 소재지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
경 력 사 항	직 장 명	근 무 기 간	근무부서	담당업무 퇴직 사유
자 격	자 격			
	자격명	취득일자	발급기관	
<p>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</p> <p>2026년 월 일</p> <p>작성자 : (서명)</p>				

<서식2>

자기소개서

○ 성 명 :	○ 생년월일 :
<p>작성일 : 2026년 월 일 작성자 : (서명)</p>	

○ 작성요령

-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, 지원동기, 생활신조와 가치관, 응시분야 관련 경력,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
-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
※ 유의사항: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음

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 안내

파주시 청년청소년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
 - 기간제근로자 모집·선발 관련 심사, 채용절차 진행 및 관리, 경력·자격 확인(조회 및 검증) 채용 여부 결정, 근로계약 체결 등
2. 개인정보 수집항목
 - 수집항목 : **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병역, 연락처, 학력·경력·자격사항, 연락처, 성별 등 신청서 등 기재사항**
 - 고유식별정보 : **주민등록번호**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-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되며,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정 기간 보유
4.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
 - 상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-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성명 : (서명) 생년월일 :

파주시장 귀하

[참고]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

<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>

▶ 제12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2013. 7. 1. 「민법」 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)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10.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11.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경우 기재)	다른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파주시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